

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운영지침
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(이하 "협동과정"이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내규는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에 적용한다.

제3조(신설요건) 협동과정 학과의 신설요건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기본원칙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"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"을 준용한다.
- ② 협동과정 신설요청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 1. 대학원 학과신설계획서(전임교원명단, 연구업적목록, 교육과정운영계획 포함)
 2.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교수 참여확인서(향후 2년간 강의계획서 및 소속 학과장 동의서 포함) 1부.

제4조(참여교수의 기준) ① 협동과정 참여교수는 2년간 1개 강좌 이상 강의 담당 교수를 의미하며, 2년간 협동과정 강의 미참여 시 참여교원에서 제외한다.

- ② 협동과정 참여교수는 2개 이상의 협동과정 학과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5조(협동과정 운영지침) ① 제3조 ①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 입학전형을 중단한다.

- ② 이 때, 학과설치기준 미달학과에 대하여 보완계획수립을 요청하고 한 학기 동안 유예기간을 둔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집을 중지한다.

- ③ 보완계획수립 요청을 받은 협동과정 학과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강의계획서(개설과목 및 담당교수 명단 포함)
2. 참여교수확인서 1부(신규 참여 교수에 한함)

④ 전반기 입학전형 지원자 석사2명 이하 또는 박사 1명 이하, 후반기 입학전형 지원자 석사 2명 이하로 입학전형이 2년간 취소된 학과는 학과를 폐지한다.<신설 2013.1.3.>

제6조(입학전형료 환불제도) 전반기 입학전형 지원자 석사 2명 이하 또는 박사 1명 이하의 경우, 후반기 입학전형 지원자 석사 2명이하의 경우, 전형료를 환불하고 해당 과정 입학전형을 취소한다.(2010 전반기 입학전형부터 시행)

제7조(기타)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학과간협동과정 참여 확인서

참여 학과명		
참여 교수명		
소속 대학(원)		직 급
소속 학과(부)		

위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의 학과 운영계획에 동의하며, 학과내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인합니다.(2년간 학과간 협동과정 강의 미참여시 참여 교원에서 제외됨을 확인합니다.)

20 . .

(참여교수) _____ (인)

담당 분야 (전공)	학과 세부전공 중 택1	
담당 교과목	개설시기(예정)	과목명 (학과 교과과정내)

위와 같이 학과간 협동과정에 참여교수로 참여함에 동의 합니다.

20 . .

(소속학과장) _____ 학과장 _____ (인)

위와 같이 본 학과 참여교수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.

20 . .

(협동학과 학과장) _____ 학과장 _____ (인)